

## 투자설명서 변경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변경 대상 펀드

NO	펀드명칭
1	프랭클린 내츨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### 2. 변경 사항

#### 프랭클린 내츨럴 리소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변경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문서전반	<u>(신설)</u>	<u>Class C-W : BC272</u>	CLASS C-W 신설
	<u>Class C-F : 91077</u>	<u>Class C-F : 86533</u>	협회코드 정정
	<u>Class C-I : 91076</u>	<u>(삭제)</u>	Class C-I 삭제
제2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<u>(추가)</u>	<u>2016년 3월 28일: 환매수수료 삭제, CLASS C-I 삭제 및 CLASS C-W 신설, CLASS C-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, 운용전문인력 변경</u>	환매수수료 삭제, CLASS C-I 삭제 및 CLASS C-W 신설, CLASS C-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, 운용전문인력 변경
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	<u>정정 전 1) 참조</u>	<u>정정 후 1) 참조</u>	운용전문 인력 변경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
- 제2부. 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 나. 종류 형 구조  - 제2부. 11. 가. (2) 종류 별 가입 자격	<u>Class C-I : 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</u>  <u>Class C-F :</u> 1. 기관투자자/기금 2. <u>최초납입금액 100억원 이상: 개인</u> 3. <u>최초납입금액 500억원 이상: 법인</u> 4. <u>집합투자기구, 변액보험</u>  <u>(신설)</u>	<u>(삭제)</u>  <u>Class C-F :</u> 1. 기관투자자/기금 2. <u>최초납입금액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</u> 3. <u>집합투자기구, 변액보험</u>  <u>CLASS C-W : 판매회사의 일임형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투자자, 특정금전신탁</u>	Class C-I 삭제  CLASS C-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 CLASS C-W 신설
제2부. 11. 나. (4) 환매 수수료	<u>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,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.</u>  <u>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]</u> 1. <u>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u> 2. <u>30일 이상 : 없음</u>  <u>[CLASS C1, CLASS C2, CLASS C3, CLASS C4, CLASS C5, CLASS C-e, CLASS C-l, CLASS C-F 수익증권]</u> 1. <u>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2. <u>90일 이상 : 없음</u>  <u>※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</u>	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u>	환매수수료 삭제

제2부. 11. 다.수 익증권 간 전환	<u>(6)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(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)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.</u>	<u>(6)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.</u>	
제2부. 13. 가. 투자자에 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- 환매수수 료	<u>[CLASS A, CLASS S 수익증권]</u> <u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</u> <u>2. 30일 이상 : 없음</u>  <u>[CLASS C1, CLASS C2, CLASS C3, CLASS C4, CLASS C5, CLASS C-e, CLASS C-I, CLASS C-F 수익증권]</u> <u>1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2. 90일 이상 : 없음</u>	없음	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u>CLASS C-I</u> <u>판매회사보수 : 0.10%</u>  <u>(신설)</u>	<u>(삭제)</u>  <u>CLASS C-W</u> <u>판매회사보수 : 0.00%</u>	CLASS C-I 삭제 및 CLASS C-W 신설
제 5 부.2. 집 합투자기 구의 해 지에 관 한 사항	▶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	▶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	
제 5 부.3. (2)자산운 용보고서	-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	-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	자본시장 법 시행 령 개정

	<p>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생략)</p>	<p>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b>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</b>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<b>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</b>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	
<p>제 5 부.3. 나. (2) 수시 공시</p>	<p>⑤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⑤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, <b>투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</b> 경우는 제외</p>	
<p>제 5 부.3. 나. (3) 집합 투자재산 의 의결 권 행사 에 관한 공시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<b>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</b>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-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-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-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b>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</b> 공시해야 합니다.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<b>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</b>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- 합병, 영업의 양도·양수, 임원의 임면,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-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-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: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b>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</b> 공시해야 합니다.</p>	

**정정 전 1)**

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
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(2015.10.31.현재)

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비고
			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	운용자산 규모(원)		
백상훈	1972년	책임운용전문인력	47개	11,743억	당사 컴플라이언스팀 (1999-2000) 당사 채권운용팀 (2000-2008) 당사 FTMIS팀 (2008-2009.4) 당사 채권운용팀 (2009.5-현재)	-
김동일	1962년	부책임용전문인력	54개	17,574억	삼성생명 (1987-1996) 삼성투신운용 (1996-1999) KTB자산운용 (1999-2000) 리젠트자산운용 (2000-2001) 당사 채권운용CIO (2001-현재)	-

\*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: 없음

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,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부책임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
주2)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정정 후 1)**

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
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(2016.03.23.현재)

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비고
			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	운용자산 규모(원)		
백상훈	1972년	책임운용전문인력	47개	10,473억	당사 컴플라이언스팀 (1999-2000) 당사 채권운용팀 (2000-2008) 당사 FTMIS팀 (2008-2009.4) 당사 채권운용팀 (2009.5-현재)	-
김강호	1983년	부책임용전문인력	27개	9,541.5억	현대증권 장외파생 구조화상품팀 (2009.12-2012.05) 당사 채권운용팀(2012.06-현재)	-

※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: 없음

주1)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,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, 부책임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
주2)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나.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

운용전문인력	운용 기간
김동일	2009.05.04 ~ 2016.03.27
김강호	2016.03.28 ~ 현재

### 3. 효력 발생일

2016년 3월 28일

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